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정관

- 제　　정 2001. 11. 22.
- 일부개정 2003. 2. 8.
- 일부개정 2005. 1.27.
- 일부개정 2006. 7. 4.
- 일부개정 2012. 3. 12.
- 일부개정 2013. 1. 18.
- 일부개정 2014. 12. 18.
- 일부개정 2018. 5. 23.
- 일부개정 2020. 1. 9
- 일부개정 2022. 5. 25.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기념사업회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기념사업회의 주된 사무소는 경기도에 두고 필요한 경우 국내 · 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 5. 23.>

제4조(사업) 기념사업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20. 1. .>

1. 민주화운동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의 건립 및 운영
2. 민주시민 교육과 민주시민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
3. 민주화운동의 역사정리를 위한 사료의 수집 · 보존 · 전산화 · 관리 · 전시 · 홍보 · 조사 및 연구
4. 민주화운동 유적의 보존 · 관리 · 조사 · 홍보 및 연구
5. 민주화운동의 기념 · 계승을 위한 사업 및 행사
6. 민주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
7. 기념사업회 및 기념관에 관한 홍보와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8.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국제교류협력 사업
9. 기념사업회의 운영을 위한 수익사업
10. 제1호 내지 제9호에 부대되는 사업

[전문개정 2012. 3. 12.]

제2장 임원 및 직원

제5조(임원) ① 기념사업회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 부이사장 5인 이내를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② 상임임원은 이사장 또는 부이사장 중 1인과 이사 2인 이내로 한다. <개정 2005. 1. 27.>

③ 상임임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청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5. 1. 27, 2012. 3. 12, 2014. 12. 18, 2018. 5. 23.>

제6조(임원의 임면) ① 이사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2012. 3. 12, 2014. 12. 28, 2018. 5. 23.>

② 부이사장과 상임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개정 2005. 1. 27.>

③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면한다. 이사장은 이사 중 1인은 노동조합이 추천한 자를 제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12, 2014. 12. 28, 2018. 5. 23, 2022. 5. 25.>

④ 감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2012. 3. 12, 2014. 12. 28, 2018. 5. 23.>

제7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이사장 및 부이사장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와 같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기념사업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그 소속 직원을 지휘 · 감독한다. 다만, 이사장이 비상임일 경우 이사장은 업무의 일부를 상임부이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5. 1. 27.>

②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이사장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기념사업회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 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전결 처리한다.

제9조(임원의 자격) 기념사업회의 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민주화운동에 기여를 한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12. 3. 12.]

제10조(임원의 신분보장) 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 임기 중 해임되지 아니한다.

1. 법령 · 정관 · 규정 또는 적법한 이사회의 결의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기념사업회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게 된 때

3. 신체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이사회가 결의한 때

제11조(임원의 해임) ① 이사회는 임원이 법령 · 정관 · 규정을 위반하거나 기념사업회의 명예를 훼손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을 의결하고 이사장(이사장의 경우에는 부이사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해임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 27, 2012. 3. 12, 2014. 12. 18, 2018. 5. 23.>

② 삭제 <2005. 1. 27.>

제12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개정 2014. 12. 18, 2018. 5. 23.>

1. 기념사업회의 재산 · 회계 및 업무와 운영 등에 대한 감사

2.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설치된 기구의 운영 및 그 업무에 대한 감사

3. 제1호 또는 제2호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발견된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의 이사회에 대한 시정요구 및 행정안전부장관에의 보고

4. 제3호 규정에 의한 행정안전부장관에의 보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소집 요구

5. 제1호 또는 제2호 규정에 의한 감사에 관한 이사장 또는 이사회에 대한 진술

[전문개정 2012. 3. 12.]

제13조(직원의 신분보장) 직원은 이 정관 및 따로 정하는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제3장 이사회

제14조(이사회) ① 기념사업회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부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이사장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5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념사업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재산의 취득 ·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기념사업회의 운영상 중요한 사항으로서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6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여 소집한다.

② 정기 이사회는 매분기마다 1회 이사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4. 12. 18, 2018. 5. 23.>

1.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2.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
3.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

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 목적, 개최일시 및 장소를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3. 12.]

제17조(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법령 및 이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5조 제2호와 제3호의 경우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사장 또는 이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는 경우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이 자신과 관계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2. 3. 12.]

제18조(회의록) 이사장은 이사회의 회의경과 및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기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19조(이사회의 간사) ① 이사회의 의사록 유지 및 기타 서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이사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4장 재산 및 회계

제20조(기본재산) 기념사업회는 다음 각호의 재산을 기본 재산으로 한다.

1.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가 출연한 출연금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삭제 2022. 5. 25.>

2. 정부, 국내 · 외의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양여나 기부 받은 토지 및 건물

3. 기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

제21조(재산의 관리) ① 기념사업회는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하고 그중 그해 예산 1% 이상의 거래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6. 7. 4, 2012. 3. 12, 2014. 12. 18, 2018. 5. 23.>

② 기념사업회가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기념사업회의 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 27.>

③ 재산의 유지 · 보존 및 관리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정한다.

제22조(운영재원) 기념사업회의 설립,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보조금, 출연금, 기부금, 기타 수익금

2. 기념사업회의 재산으로부터의 과실수입 및 각종 사업을 통한 사업수익

제23조(관람료 및 이용료) ① 기념사업회는 기념관의 관람료와 기념관 자료 또는 기념관 시설의 이용에 대한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관람료 및 이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4조(수익사업) 기념사업회는 그 목적 범위안에서 기념사업회의 운영과 관련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수익사업의 내용 · 범위 · 조건 및 절차 등은 따로 정한다.

제25조(저작권 등의 귀속) 기념사업회 직원의 업무수행중 이루어진 저작권, 특허권, 기타 무체재산권은 따로 특별한 계약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념사업회의 소유로 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직원 등에 응분의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26조(회계원칙) ① 기념사업회의 재산과 회계의 관리자는 기념사업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② 기념사업회의 회계는 기업회계원칙에 의하여 처리하며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27조(회계연도) 기념사업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8조(재산의 평가) 기념사업회의 모든 재산은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재평가액으로 평가한다.

제29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① 기념사업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 12. 18, 2018. 5. 23.>

②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 및 예산 중 그해 예산의 1% 이상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전항에 준한다. <개정 2014. 12. 18, 2018. 5. 23.>

③ 제1항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는 목표, 방침, 주요사업의 내용 및 소요예산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2. 3. 12.]

제30조(결산보고) ① 기념사업회는 당해 회계연도 종료후 60일 이내에 세입 · 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18, 2018. 5. 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에는 재산목록 · 업무현황 및 감사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3. 12.]

제31조(잉여금의 처리) 기념사업회의 매 사업연도 잉여금은 전년도 이월 손실을 보전하고 나머지가 있을 경우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결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기념사업회의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2. 3. 12, 2014. 12. 18, 2018. 5. 23.>

제32조(임원의 보수 제한 등) 상임임원을 제외한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사업수행, 회의참석 등 업무처리상 필요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활동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 1. 27.>

제5장 조직

제33조(기구) ① 기념사업회에는 제2조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무처 등을 둔다.

② 기념사업회 사무처 등의 기구 및 담당사무, 정원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전문개정 2012. 3. 12.]

제34조(부설기관) ① 제4조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② 부설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3. 12.]

제35조(고문 · 지도위원 및 자문위원)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문 · 지도위원 및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 · 지도위원 및 자문위원은 이사장의 자문에 응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기념사업회의 업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제2항의 경우에 의거하여 자문 또는 회의에 참석한 고문 · 지도위원 및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3. 12.]

제36조(위원회) ① 기념사업회의 사업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념사업회에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상설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기념사업회에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위원회를 두어 기념관건립에 따른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⑤ 이사장은 위원회 운영에 참여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7조(후원회) ① 기념사업회의 재원조달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후원회는 2인 이내의 회장, 5인 이내의 부회장, 특별회원 및 일반회원으로 구성한다.

③ 후원회의 구성원은 기념사업회에 기부금품을 출연할 수 있다.

④ 후원회의 회장 및 부회장은 이사장의 자문에 응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기념사업회의 재정 및 운영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38조(정관의 변경) 기념사업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2. 18, 2018. 5. 23.>

[전문개정 2012. 3. 12.]

제39조(규정의 제정) 기념사업회의 운영상 필요한 규정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한다. 다만 총정원의 변경, 인건비 총액의 변경, 퇴직급여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6. 7. 4, 2012. 3. 12, 2014. 12. 18, 2018. 5. 23.>

제40조(위임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41조(업무협조) ① 기념사업회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연구단체,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열람 · 복사 · 대여 또는 위탁전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료 소장자에게는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3. 12.]

제42조(공고) 기념사업회의 중요한 사항의 공고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공고는 주된 사무소 또는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게시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05. 1. 27.>

제43조(준용규정) 이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 3. 1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법인설립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관작성 및 날인) 기념사업회의 설립을 위하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법」 부칙 제 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위원이 2001년 11월 22일 각각 기명 날인한다.

설립위원 성유보

설립위원 김용태

설립위원 나병식

설립위원 박원순

설립위원 성해용

설립위원 안병욱

설립위원 장인태

설립위원 조성우

설립위원 지은희

설립위원 최 열

부칙 <2003. 2. 8.>

이 정관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 27.>

이 정관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7. 4.>

이 정관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3. 12.>

이 정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 18.>

이 정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2. 1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칭변경에 따른 제 규정의 개정) 제39조에 따라 제정·시행 중인 기념사업회의 제 규정 중 “안전행정부”는 각각 “행정자치부”로, “안전행정부장관”은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2018. 5. 23.>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칭변경에 따른 제 규정의 개정) 제39조에 따라 제정·시행 중인 기념사업회의 제 규정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2020. 1.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5. 2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